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

제출년월일 : 2000. 8. 2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과

나.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 되는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실·국·과·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실·국·과의 서무담당자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3. 관계법령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나.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선」관련 공문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항 본문중 "실·국·과·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을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4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